

##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주주 여러분께

2017년 3월 31일 개최된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 배정방식의 3종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상법 제416조 및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967주 ☞ 주식에 관한 내용 - 별첨참조

1. 신주식의 발행가격: 금310,118원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1. 신주식 인수방법: 정관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

1. 제3자 배정 대상자:

가) 선정경위: 회사 경영상 원활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을 고려하여 선정함

나) 배정대상자

제3자 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배정금액
케이브릿지1호스타트업투자조합	967주	금299,884,106원

1. 청약장소: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1. 납입장소: 신한은행 테크노마트지점

1. 청약기일: 2017년 4월 17일

1. 납입기일: 2017년 4월 17일

1.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한다

2017년 3월 31일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가길 76, 203호(서교동)

대표이사 김진우

## <주식에 관한 내용>

### 1.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내용

- (1) 본건 주식(이하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제2조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제3조의 상환권 및 제4조의 전환권을 내용으로 한다.
- (2)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 (3) 회사는 주식의 분할과 병합 또는 주식배당을 행하는 경우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과 방식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써, 우선주주에게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써 실시해야 한다.
- (4)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주에 대해서는 그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가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써 신주를 배정 또는 발행한다. 여기서 “지분율”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 (5)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조 제(2)항(해산시의 우선권), 제3조(상환권) 또는 제4조(전환권)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우선분배권

- (1) 본건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 (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가. 우선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받는다.
    - 1)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ㄱ) 발행가액과 (ㄴ)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변제받는다.

- 2) 잔여재산이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3)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전환상환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다.
  - 4) 회사가 제3자에게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도등"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정관에 따라 그 결의시에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는 1)목 내지 3)목에 따른다.
  - 5) 본항의 적용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인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①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우선주주들이 인정(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서면으로 인정하여야 함)하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거래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의 가중평균 종가.
    -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단,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이사회에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회사가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한다. 만일 회사가 반대주주들의 이의제기시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상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나. 우선주주는 청산하는 주요자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매각조건과 동등한 조건하에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다. 제(2)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x)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y)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등 하는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의 신주발행 및/또는 주주의 구주 매각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목적상 '경영권의 양도'라 함은 양수인이 그 처분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지분증권 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거래를 말한다.
- 4) 기타 법률 및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해산사유

### 3.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권

- (1) 본건 우선주주는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사유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2) 상환권의 행사기간
  - 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되는 날로 부터 우선주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 나. 행사기간 내에 본조 제(4)항에 정한 상환청구서가 발송된 때에는 회사의 실제 수령일에 관계 없이 상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본다.
- (3)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 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단, 주식의 분할과 병합, 무상증자 기타 유사한 사유의 발생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에 의한다)과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0%의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상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

나.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라 함은 최근 6개월 사이에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된 가격, 국내 4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공정한 가격 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4) 상환권의 행사 절차

가. 상환권의 행사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상환청구서"라 한다)로써 한다.

나. 상환청구서에는 우선주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대상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상환권 행사의 효력 발생 및 순위

상환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상환권 행사의 효력

가.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청구 대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우선주주는 주권 미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청구대상주식의 주권(단, 주권 분실등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을 회사에 교부하도록 한다.

나.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당시 회사에게 유보된 상환가능이익(이하 "상환 재원"이라고 한다)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이하 "상환가능주식총수"라고 한다)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상환기일에 청구대상주식 총수에 대한 상환의무를 진다.

다. 본항의 목적상 상환재원은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상환청구연도"라고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 이익의 총액(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에 중간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는 금액

2) 상환청구연도 기간 내로서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익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식소각에 사용된 이익의 액

3) 상환청구연도 기간 내로서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기행사된 상환권에 의해

## 상환의무가 발생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

- (7) 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일은 다음과 같다.  
제(6)항 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일은 회사가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8) 회사가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9) 회사가 상환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소 단위는 1주로 하며, 그 미만의 단주는 절사한다.
- (10) 회사는 행사기간 동안 본건 우선주주의 상환권 행사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해태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 본조에 정한 상환의무를 진다.
- (11) 본건 우선주주는 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청구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해 주식에 대한 상환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되고, 회사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 (12)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권은 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상환권이 행사기간 중에 행사되었으나 회사가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하여도 상환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 (13) 본조의 상환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상환의무는 제(6)항 다.호의 상환재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의해 변경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4.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권

본건 우선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본점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완전히 납입되고 추가 납입의무가 없는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단,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2) 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아래 제(7)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되나,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단,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전체의 2/3 이상을 보유한 우선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아래 정의됨)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 등을 실시할 수 없다).
- (3)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 (4) 전환의 절차: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해당 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단주를 대신하여, 동 단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주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우선주주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식의 주권을 교부 받기에 앞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여 이를 회사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신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회사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권을 제출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i)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우선주주에게 해당 보통주의 수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하고, (ii) 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현금을 지급한다.

- (5) 전환의 효력발생: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하여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의 영업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 전환일 현재 해당 보통주식의 등록된 주주로 간주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환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선주주의 모든 권리(전환상환우선주식 주권의 제출에 따라 보통주식을 지급받고, 동 전환시 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며,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이미 결의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는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중지되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전환 이후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되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자동 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7)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자본조정, 주식의 재분류,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전환상환우선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 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추가주식의 발행에 따른 가격조정

1)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그 발행 직전에 유효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주식(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신발행주식수는 완전희석화 기준으로 계산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text{발행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위 "추가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보통주식을 의미하며,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일체 유형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옵션,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나(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의 사유로 발행되거나 발행될 보통주식은 제외한다.

- 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의한 경우
- ② 모든 종류의 주식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는 주식분할, 주식배당 또는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자본조정의 경우
- ③ 주식배당, 주식분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의 정관 또는 본 계약의 조항상 전환가격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보통주식. 다만, 이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전환가격조정에 따른 확인서: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회사는 우선주주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전환신주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교부한다.

(8) 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회사는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준일의 사전 통지 의무: 회사가 현금 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등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주에게 기준일 20일 전에 그 이익배당, 권리의 부여 등을 위해서 결정된 기준일과 이익배당, 권리의 수량 및 성질을 특정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